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국궁장(금오정)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궁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,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국궁장(금오정)의 위치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

- 체육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)

구 분	위 치	기 능
국궁장(금오정)	구미시 3공단1로 219	국 궁

-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
구 분	평일	토 · 일 · 공휴일	비 고
국궁장(금오정)	무 료		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동락공원 내에 위치한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궁장(금오정)을 추가하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국궁장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체육시설로 분류되나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오면서 국궁장 시설 및 궁도협회 관리의 이원화, 국궁장 관리·운영 근거 미비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.
- 국궁장 관리업무가 2020. 10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궁장을 추가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국궁의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규정한 만큼 국궁장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.
-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